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30호 2015. 11. 09.(월)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74호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 ----- 1
-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75호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1
-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76호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4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7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9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7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21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74호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장제4절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행정기간 내부간에 처리할 수 있는 일로 민원인이 재차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관장의 최종결정"이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에서도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그 적정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행)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3.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4.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5. 기관장의 최종결정

제2장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 등

제4조(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민원봉사과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민원후견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복합민원 또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3.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3장 실무종합심의회

제6조(설치) 복합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부서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관사항을 공동심사, 처리하여 심의의 효율과 시간단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이 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관련부서담당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접수된 민원과 관련 있는 외부기관이나 단체관련 실무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민원과 관련 있는 외부기관이나 단체관련 실무자를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심의회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심의회의 간사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민원서류 처리담당자가 된다.

②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서(별지 제1호서식)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대상) ① 심의회의 심의대상 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합민원으로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이고 협의대상 유관부서(기관)가 5개 이상일 경우
2. 사안이 중대하고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처리주무부서장은 민원 접수 후 48시간 안에 심의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 후 3일 안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접수 후 5일 안에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민원조정위원회

제10조(설치) ① 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 중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민원이나

협의·조정사항이 필요한 민원 등 제11조의 대상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3.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4. 처리주무부서 또는 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
· 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6.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7항에 따른 민원의 심의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12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국장, 관계 부서의 국장, 감사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및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담당부서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제11조의 심의대상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 구성하며, 해당 민원사무가 끝남으로써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2(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민원서류처리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심의안건을 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서기는 심의안건(별지 제2호서식)과 의결서(별지 제3호서식)를 기록·관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민원처리통보

제13조(처리진행상황의 통지) ① 구청장은 처리 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접수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 등을 즉시 통지하고,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중간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별로 지금까지 처리된 민원내용, 문제점 및 조치사항, 최종처리결과 예상시기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최종처리결과 통지) 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청장의 최종결정을 받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 진술)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회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을 심의회 및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심의회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서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구청 소속직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칙

제17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적용의 예외) 구 외의 민원사무심사관을 별도로 두는 기관에서는 제6조·제7조·제8조·제10조·제12조·제12조의2 규정을 따로 정하여 이 규칙을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서

□개 최 일 시 :

□장 소 :

□민원사무명 :

□심 의 안 건 :

적 합	부 적 합	비 고

※해당(적합 및 부적합)란에는 근거 규정 등 사유를 간단명료하게 기술

상기와 같이 심의결과를 제출합니다.

위원회직위 : 소속 : 직 : 성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접수일	. . .			처리기한	. . . 까지(일간)		
구 분	민원명	주 된 소재지 (위 치)	주된 행위 (내용)	관련 부서	근거 법규	저촉 여부	예상되는 문제점
주목적 민원							
복합 민원							

[별지 제4호서식]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

- 민 원 명 :
 민원인 주소·성명 :
 접 수 일 자 :
 처 리 기 한 :

귀하께서 우리구에 신청하신 상기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 내용과 같이 처리진행상황을 알려드리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과 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처리부서	과	과	과	과
완료민원				
처리중인 민원사항				
문제점 및 조치계획				
부서별 처리 예상시기				

. .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광역시서구문화대학”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로, “서구”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6조 중 “18세이상 구민으로서 인천광역시서구”를 “18세 이상 구민으로서 구”로 한다.

제7조 중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소는”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라 교육 장소는 구”로 한다.

제8조 중 “당해시설등”을 “해당 시설 등”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강료의 납입결과 통보)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강료의 징수·납입 시에는 그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하여 문화대학장”을 “따라 학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료되는날”을 “종료되는 날”로 한다.

제12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 강 신 청 서

접수번호		신청과목	
성 명		<u>생년월일</u>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상기와 같이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신청과목	
성 명		<u>생년월일</u>	
수 강 료			

이 접수증은 개강식 후 수강증과 교환해 드립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문 화 대 학 장

릿”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5일전까지”를 “5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의거”를 “따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사용허가시”를 “따른 사용허가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를 “제1항에 따라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훼손시는”을 “훼손 시는”으로 한다.

제8조 중 “의한 사전허가와 반입시 검사를 필한후”를 “따라 사전허가와 반입 시 검사를 필한 후”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의하여 구청장에게 사용예정일 7일전에”를 “따라 구청장에게 사용예정일 7일 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제2호중”를 “제2호 중”로 한다.

제12조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시,”를 “제23조에 따른 위탁

관리 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구문화회관사용신청서

단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		
			자		
전시, 공연, 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일 회 시간)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시설				
	부속시설				
입 장 료					
비 고	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				
<p>「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신청인의 주소 : 성 명 : (인)</p> <p style="text-align: right;">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p>					

(별지 제6호서식)

서구문화회관사용료(감면)신청서

단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 소		연락처	사		
			자		
전시,공연, 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일 회 시간)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시설				
	부속시설				
감면신청 사유					
<p>「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1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신청인의 주소 : 성 명 : (인)</p> <p style="text-align: right;">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p>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7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1. 0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고산후로161번길 46외 1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11. 06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5-11-06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797-5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61번길 46 (원당동)	2008-12-31	고산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28-4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74번길 22-8 (원당동)	2008-12-31	고산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78-15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104번길 17-1 (연희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4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82-3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86번길 5-18 (연희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50-5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로 185 (오류동)	2012-10-25	"가슴에 불도록 안다" 라는 순우리말에서 착안	
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93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 7 (경서동)	2013-07-30	보석을 이용한 경관구조계획 개념에서 착안	
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159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8번길 26 (경서동)	2013-07-30	보석로 시작지점부터 약 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38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2번길 29-16 (원창동, (주)태신글로벌)	2013-12-02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 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36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2번길 47-15 (원창동)	2013-12-02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 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35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2번길 47-21 (원창동)	2013-12-02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 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11-168, 111-175, 111-172, 111-171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30번길 29-7 (석남동)	2009-07-06	서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360, 361-9, 361-6	인천광역시 서구 설원로 67 (대곡동)	2013-07-30	자연부락 명칭 반영	
13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017-5, 1017-4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33번길 11 (마전동, 강선 하이베라스)	2008-12-31	완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37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 160 (원창동, 서인천현대서비스(주))	2009-09-22	원창동과 석남동의 머릿글자를 따 명명	
15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78-14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124번길 8 (가좌동)	2009-07-06	원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64-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138번길 16 (연희동)	2012-03-30	청라라임로의 시작점에서 1,3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67-1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42번길 6-11 (경서동)	2012-03-30	청라루비로의 시작점에서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57-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260번길 15 (경서동, 청라스파렉스주차빌딩)	2012-03-30	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2,6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3-1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49번길 19-1 (경서동)	2012-03-30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4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2-3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49번길 8 (경서동)	2012-03-30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4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17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5. 11. 0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서달로130번길 29-5외 3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별도열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고시일 : 2015-11-06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111-11	서달로130번길 29-5	2015.10.29	건물 멸실	
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7-4	옷우물로34번길 6-2	2015.10.23	건물 멸실	
3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7-5	옷우물로34번길 6-1	2015.10.23	건물 멸실	
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55-4	경서로32번길 3-13	2015.10.21	건물 멸실	

